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2023. 3. 22.(수)
제407회 임시회
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3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9일

3. 제안이유

가.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개별조례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

나. 조례 제정('03. 1. 3.)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전략산업에 관한 정의 변경(안 제2조)

나.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조문 정비(안 제5조)

다.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문 정비(안 제6조~안 제18조)

라. 수행기관 등 지원 대상 신설(안 제20조)

마. 지도·감독, 전략산업 육성 유공자 포상 등(안 제21조 및 제22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○ 우리 도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지역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

○ 생산·수출·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으로 충청북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지원하고자 함

나. 조례안의 주요 개정 조항에 대한 의견

○ **안 제7조**는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여 위원장을 도지사, 부위원장을 경제부지사로 격상하였고, 당연직 위원도 과학인재국장, 경제통상국장, 투자유치국장,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기존 조례에 정한 인원보다 증가한 6인으로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

○ **안 제9조**는 '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'에 관한 사항으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제1항과 비교할 때, 제척 등의 사유를 강화(제1호)하거나 완화(제3호)하여 규정하였음[7)]

- 제3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증언, 감정 외에 **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을 삭제하여 제척·기피·회피 조건을 완화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**

다. 종합의견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 재정비를 통해 안 제7조, 위원회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고, 위원회 구성 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향상하였을 뿐 아니라 도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도정 대응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반적 내용은 적절하고 타당함

○ 다만 조례안 제10조는 개정을 통해 그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나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와 비교하여 **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및 개인적 이용금지 규정이 제외되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**

○ 끝으로, 조례안 제18조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,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4조 제1항은 **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는데, 이 조례 위원회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**

	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전부개정안
	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(생략)	제7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 ① (생략)
	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	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**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·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**
	2. (생략)	2. (생략)
7)	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**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** 또는 감정을 한 경우	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(鑑定)을 한 경우